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·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·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, 이를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·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시·도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
2.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·홍보
3.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·보급
4.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(농업용 드론, 농업용 로봇 포함)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·지원
5.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

6.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 지원
7. 인공광원,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(이하 “수직농장(식물공장)”)이라 한다)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성화 지원
8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5조(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2.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
3.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
4.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
5.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 실적 목록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 및 우선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를 스마트 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연간 총 매출액(그 산정에 관하여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를 준용한다)이 50억원 이상인 업체
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부도·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정식온실, 수직농장(식물공장) 등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, 스마트축산의 경우 축종·분야별 현황
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(농업용 드론, 농업용 로봇 포함) 및 서비스 산업 현황
3. 스마트농업 도입 후 생산성·노동력·소득 변화
4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매출액 및 기술수준
5.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
6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8조(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)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”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

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

1. 시설원예 기술사
2. 축산 기술사

제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(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
3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·활용에 관한 사무

제10조(표준화 사업의 내용) 정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(이하 이 조에서 “스마트농업 표준”이라 한다) 요소 발굴 및 표준 제·개정
2.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와 제품 개선 및 실증 등 지원
3. 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
4. 스마트농업 표준 적용 제품 및 서비스 보급 지원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·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 및 제어 데이터
2. 생육데이터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

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·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공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·연계된 데이터를 데이터 생산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13조(스마트농업데이터 등 제공 요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

라 연계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제11조의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4조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등) ①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
 2. 관할 시·도지사가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명칭·위치·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제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전체 부지 면적(생산시설 면적이 전체 부지의 50% 이상이어야 하며, 실제 재배면적을 적용한다)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(조성할 계획인 지역을 포함한다). 다만, 스마트축산의 경우 전체 부지 면적(생산시설 면적이 전체 부지의 20% 이상이어야 하며, 실제 사육면적을 적용한다)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(조성할 계획인 지역을 포함한다.)
 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
-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
 2. 관할 시·도지사가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명칭·위치·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해제의 고시 등)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

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, 해당 지구조
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
2. 총사업비(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의 100분의 10 이상을
변경하는 경우
3.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

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
인을 받으려면 해당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
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치도
2.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(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)
3.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
4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)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
립하는 기본계획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
다.

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
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
조직	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는 것
시설	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(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)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
인력	스마트농업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와 비슷한 경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

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·열람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명칭:	사업자등록번호:		
	성명(대표자 성명):	생년월일:		
	대표자 주소:	전화번호:		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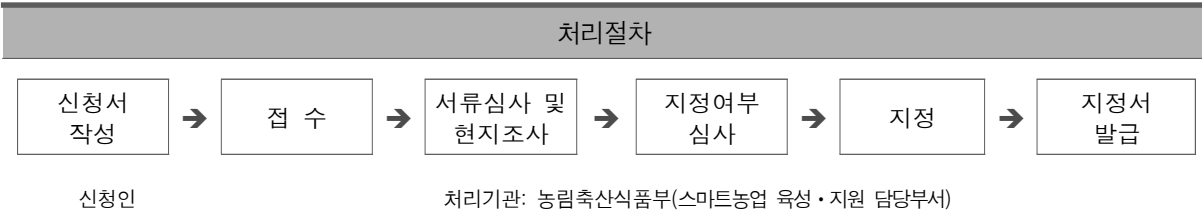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.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3.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4.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.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·연구 실적 목록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6.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(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

제 호

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무소 주소:

(전화번호)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